

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출 서류 안내문

구분	해당 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
공동 서류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계약용, 단 외국인인 경우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 *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서명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서약서	본인	· 각 청약별 자격 확인 - 견본주택 비치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· 계약체결을 위한 수집·이용동의 - 견본주택 비치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발급기간 : 2017.01.01.~2020.08.21.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)
추가 확인서류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복무확인서	본인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대리인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신청자	· 청약자 본인 발급분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
	위임장	신청자	·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- 견본주택 비치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
- *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21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반드시 본인발급 및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(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하여 발급)
- *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(뒷번호 포함)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*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* 당첨 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 안내문 (1/2)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
공통서류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계약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*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
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발급기간 : 2017.01.01.~2020.08.21.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혼인신고일확인
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상세)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-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/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
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)
	서약서	본인	· 각 청약별 자격 확인 - 견본주택 비치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· 계약체결을 위한 수집·이용동의 - 견본주택 비치
추가 확인서류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	기본증명서	자녀	·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·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- 견본주택 비치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의 경우
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	· 비사업자의 경우 - 견본주택 비치
대리인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신청자	· 청약자 본인 발급분(용도:주택공급신청 위임용)
	위임장	신청자	·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- 견본주택 비치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

*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21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반드시 본인발급 및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(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하여 발급)

*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며,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(뒷번호 포함)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*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* 당첨 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 안내문 (2/2)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 / 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·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'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'은 직인날인(해당직장/세무서)이 되어야 하며,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'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'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직장 · 세무서
	신규취업자/금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·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재직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. 	·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, 재직증명서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※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	·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·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· 사업자등록증 사본	·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·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)	· 세무서
	신규사업자	·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· 사업자등록증 사본	· 국민연금관리공단 · 세무서
	법인사업자	·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· 법인등기부등본	· 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·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·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·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· 세무서 ·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·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·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	·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· 해당직장	
무직자	· 비사업자 확인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직자일 경우에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· 건본주택	

다자녀 특별공급 제출 서류 안내문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
공통서류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계약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*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
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발급기간 : 2017.01.01.~2020.08.21.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)
	서약서	본인	· 각 청약별 자격 확인 - 견본주택 비치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· 계약체결을 위한 수집·이용동의 - 견본주택 비치
	다자녀 가점 배점표	본인	· 배점점수 확인 - 견본주택 비치
추가 확인서류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함)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)
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·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(2017.01.01 ~ 2020.08.21)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자녀	·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·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·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한부모 가족증명서	본인	·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만 19세 미만 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- 견본주택 비치	
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의 경우	
대리인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신청자	· 청약자 본인 발급분(용도:주택공급신청 위임용)
	위임장	신청자	·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- 견본주택 비치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
*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21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반드시 본인발급 및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(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하여 발급)

*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며,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(뒷번호 포함)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*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* 당첨 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출 서류 안내문

구 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
공통서류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계약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*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
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(2017.01.01 ~ 2020.08.21)
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·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(2017.01.01 ~ 2020.08.21)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인 경우 사실확인
	서약서	본인	· 각 청약별 자격 확인 - 견본주택 비치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· 계약체결을 위한 수집·이용동의 - 견본주택 비치
가점 배점표	본인	· 배점점수 확인 - 견본주택 비치	
추가 확인서류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본인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·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)
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비속	·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(2017.01.01 ~ 2020.08.21.)
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
대리인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신청자	· 청약자 본인 발급분(용도:주택공급신청 위임용)
	위임장	신청자	·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- 견본주택 비치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21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반드시 본인발급 및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(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하여 발급)
- ※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(뒷번호 포함)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당첨 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공급 서류 제출 안내문

구 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	비고
공동서류 (가점제, 추첨제, 예비당첨자)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계약용, 단 외국인인 경우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	
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서명	
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사항, 세대 구성 사유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	
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(2017.01.01 ~ 2020.08.21)	
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(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	
	복무확인서	본인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	
	서약서	본인	· 각 청약별 자격 확인 - 견본주택 비치	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· 계약체결을 위한 수집·이용동의 - 견본주택 비치	
가점 배점표	본인	· 배점점수 확인 - 견본주택 비치		
추가서류 (가점제, 예비당첨자)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(3년 이상)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)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	
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(1년 이상)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: 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	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 존·비속	·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(2017.01.01 ~ 2020.08.21)	
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: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	
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·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(해당자 필수)
	주민등록등본	배우자	·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(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)	
대리인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신청자	· 청약자 본인 발급분(용도:주택공급신청 위임용)	
	위임장	신청자	·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- 견본주택 비치	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21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반드시 본인발급 및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(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하여 발급)

※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며,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(뒷번호 포함)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당첨 유형별로 서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